

중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는 청소년기본법,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청소년의 건전육성, 복지증진 등 청소년수련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구”가 “수탁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협약에 의한 위탁시설의 현황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시설명 : 중구청소년수련관
2.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5길 19(신당동)
3. 시설규모 : 대지 1,553㎡, 건물 4,661.27㎡(지하 2층, 지상 3층)

제3조(위탁기간 등) ① 시설 관리·운영기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2019년 5월15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본 협약의 위·수탁기간으로 한다.

② “중구”와 “수탁법인”은 합의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사업의 내용) “중구”는 “수탁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한다.

1. 청소년의 문화·체육·인성 등 수련활동 사업
2. 청소년의 지식·정보화 능력배양 사업
3. 청소년 육성사업
4. 청소년 상담활동 사업
5.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6. 시설의 시설물·장비 등 유지관리
7. 기타부대사업
8. 기타 중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위탁재산) ① 위탁재산은 “중구”와 “수탁법인”이 위탁시 인수·인계한 자산과 위탁기간동안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의한다.

② 이 협약 체결 이후 “중구”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물과 장비는 물론 “수탁법인”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신·증·개·이축 포함) 및 장비도 “중구”에 기부하고, 위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위탁재산을 위탁받은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수탁법인”의 의무 등) ① “수탁법인”은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시설의 재산 및 권리를 양도·교환·재위탁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시설 일부에 대한 재위탁(위임) 시에는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시설의 위탁운영을 이유로 “중구”를 상대로 시설과 재산의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중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④ “수탁법인”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처리 지연, 부당 비용 징수 등 불공정한 사무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⑤ “수탁법인”은 시설물의 신·증축,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또한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의 수명유지를 위하여 정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법인”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수탁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2016년도 시설 위탁 운영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6년 총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구”를 피보험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구”에게 보증보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구청소년수련관 법인전입금 출연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① “수탁법인”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별 세부관리·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중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구”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승인한다.

② 회계연도 중 예산이 수반되는 등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운영비 등) 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체수입, 보조금(국·시·구비), 법인전입금 등으로 한다.

② “중구”의 보조금은 물가변동 및 운영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증감 조정한다.

③ 연간운영비 예산은 “수탁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제출받아 검토 후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확정 통보한다

④ “수탁법인”은 운영경비 집행에 있어, 관계규정과 고유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재무회계법규와 중구의 예산, 재무·회계 관련 조례·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위탁운영비용의 지급방법) ① “수탁법인”은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말 또는 매분기 마감 10일 전까지 필요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중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 전까지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등 “수탁법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이유로 보조금을 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① “수탁법인”은 “중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구”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법인”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청소년 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중구”에 귀속되며, 일일결산하여 시설 지정계좌에 입금조치 후 매 익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예산에 세입조치한 후 보조금 교부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년수련관 운영) ① “수탁법인”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시 관련 법규 및 조례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적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청소년활동 이외에 위기 청소년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전수) ① “중구”는 시설물 운영·관리지식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시설물에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법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 및 협약해지 이후 “중구”가 시설물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법인”의 인력을 필요로 할 경우 “중구”와 “수탁법인”의 합의 후 “중구”가 이를 특채할 수 있다.

제14조(취득재산의 귀속) “수탁법인”이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수익과 재산은 “중구”에게 귀속된다.

제15조(감독) ① “중구”는 시설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본 협약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구”는 관계공무원 또는 “중구”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실의 의무) ① “수탁법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협약 또는 지침 등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시설물 운영에 관한 “중구”의 지시와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제12조에서 정한 인원 이외에 “중구”가 정한 시설별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종사원에 대하여도 준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법인”은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종료 후에는 출입문 등의 시건 및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제17조(종사원에 대한 책임) ① “수탁법인”은 본 협약에 의거 채용하는 직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작업규율 유지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감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4.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5.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6. 기타 본 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③ 시설의 종사원 전원은 “수탁법인”의 피고용자이며, 수탁기간 및 수탁기간 종료 후 “중구”는 고용관계나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④ “수탁법인”은 종사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해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제반규정 준수) ① “수탁법인”은 “중구”가 본 협약을 이행하고자 요구, 통지하는 모든 사항과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체결 후 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수탁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민·형사상의 책임 등) ① “수탁법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면서 “수탁법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탁법인”은 “수탁법인”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이를 “중구”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수탁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법인”은 시설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이용자, 기타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중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수탁법인”이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보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가 “중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탁법인”은 “수탁법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중구”가 면책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중구”와 “수탁법인”의 부진정 연대책임이 판결로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중구”는 “수탁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배상금 등의 우선공제) “중구”는 제19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 등이 발생한 경우 “수탁법인”에게 지급할 운영 관리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수탁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인 존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1년 이내에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해지) ① “중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고기간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2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유예기간이나 최고 없이 바로 해지통보 할 수 있다.

1. “수탁법인”이 제6조 각 항의 의무 또는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2. “수탁법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중구”에 손해를 입히는 때
3. “수탁법인”이 수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중구”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법인”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4개월 전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구”는 이로 인한 손실을 “수탁법인”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4호 내지 5호에 의한 “중구”의 손실은 청구할 수 없다.

④ 협약해지 예정일 이후 차기 수탁자가 인수하게 되는 때에는 그 인수시까지 계약의 효력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비용은 “중구”가 부담하되 제1항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수탁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⑤ 협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법인”은 협약체결 당시의 인수인계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증감 내용을 표시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보수 상태로 시설물을 “중구”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의 가입 등) ① “수탁법인”은 “중구”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화재, 풍수해 등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험을 지원, 가입했을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3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① “수탁법인”은 종사원의 파업, 태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중구”에 통보하고 “중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중구”는 관련 직원(관장포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구”가 지정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법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관계법령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수탁법인”은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

제25조(협약해석등) ① “중구”가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통보한 모든 사항도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할 경우 보충적으로 민법도 준용하며,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은 “중구”의 관할 법원 전속관할로 한다.

제26조(고용승계 등 기타) ① “수탁법인”은 현 종사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원 고용승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계약의 일부로 한다.

③ “수탁법인”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탁법인의 목적, 사규 등으로 공공의 취지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발생은 2016년 5월 16일로 한다.

부 칙

- ① 법인전입금은 3년간 60,000천원으로 하되, 2017, 2018년 내에 각각 20,000천원씩, 2019년에는 4월까지 20,000천원을 시설회계예산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② 시설회계예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 시설이나 법인회계로 전출 할 수 없다.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중구”와 “수탁법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5월 일

“중구” (위탁인)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수탁법인” (수탁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대표 김 찬 호 (인)